

이천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주민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
번호

제출연월일 : 1999. 6.
제출자 : 이천시장

□ 제안이유

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본 조례에서 지방재정운영상황의 주민 공개의 제한 규정중 실효성이 없는 관련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행정구현 실현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이를 개정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가. 지방재정운영상황의 주민공개의 제한 규정중 현재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과 시설공사, 물품의 제조 및 구매,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함(안 제5조 제2호·3호).

이천시조례 제 호

이천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주민공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이천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주민공개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호·제3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 개 정 안

제5조 (주민공개의 제한) 시장은 다음 각 제5조 (주민공개의 제한) -----

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 공개를 -----
제한할 수 있다. -----

1.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·정책에 관한 사항 1. -----

2.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·정책 〈삭제〉
에 관한 사항

3. 시설공사, 물품의 제조 및 구매,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〈삭제〉

4.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4. -----

